

1차 실업인정 교육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ei.go.kr

- ※ - 먼저 온라인취업특강(STEP) 클릭 또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단계에서 구직활동외 활동사항 부분에 [STEP 동영상교육바로가기] 로 보셔도 됩니다.
- ※ - 번호 순서대로 빨간 도움말을 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 선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STEP)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민원처리현황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희망카드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실업급여 수급내역 조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취업사실 신고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실업크레딧(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은 의무사항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신청할 <input type="radio"/> 신청하지 않음 (실업크레딧신청일자: 2020/12/15)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시 고지서 수령 방법	<input type="radio"/> 우편고지 <input checked="" type="radio"/> 전자고지
국민연금 보험료 자기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희망할 <input type="radio"/> 희망하지 않음
재산 소득 확인 동의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크레딧 신청만 가능합니다. ('16.7.25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신청가능)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일 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및 신청 내역 변경(신청취소, 정보변경, 재신청) 관련사항은 국민연금 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공단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 국민연금 공단 지사찾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와 아울러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기존 계좌가 있음 별도의 첨부파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9999/12/31 (9회차) (제출일: 9999/12/31)	실업인정 대상기간	2021/07/14 ~ 9999/12/31
지급은행	카카오뱅크 <input type="text" value="검색"/>	예금주	가등록계좌없음
계좌번호	333*****20660	신규/변경 등록여부	<input type="radio"/> 기존 <input checked="" type="radio"/> 신규 <input type="radio"/> 변경

2

i 이전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당시 구직급여를 받은 계좌번호가 기본값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어 계좌번호를 신규 등록해야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계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각각 '신규' 또는 '변경'에 체크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사본

신규 등록 또는 변경할 계좌번호의 통장사본 (파일명에 특수문자를 넣지마세요.)

C:\wfakepath\통장사본.bmp + -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어떠한 형태로든(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거나 수당이 발생하는 회의 참석, 자문 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	--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산재 휴업급여를 지금 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	--

취업내역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예정)이거나 개인 사업을 개시하셨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	--

1. 구직활동내역 **[상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문을 읽고 동의를 하셔야합니다.]**

Tip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할 경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워크넷을 이용하시면 구직활동/실업인정신청이 더욱 편리합니다.

[워크넷바로가기](#)

전체기간 중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있음 없음

2.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보완지침에 따라, 1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로 자체학습 또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 수강을 해야합니다.

교육자로 자체학습을 한 경우에는 아래의 과정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선택한 뒤 세부내역으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로 자체학습을 작성하고, 첨부구비서류로 수강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동영상을 수강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과정에서 온라인취업특강을 선택한 뒤 검색버튼을 클릭하고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별도 첨부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클릭]**

[\[집체교육자료 바로가기\]](#)

[\[STEP 동영상교육 바로가기\]](#)

전체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

ex) 계좌제, 직업훈련, 부당해고 구제자,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등

있음 없음

과정

세부내역(훈련기관,과정명,기간 등)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2021/10/15 / 1차 실업인정 교육(STEP)

과정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검색버튼

작성시 유의 사항

- 기재하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및 지원금 등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반환 및 추가징수)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위장고용, 해고 등)
- 이직사유 허위 기재
- 취업사실 은닉,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

**제출하기 전에 다시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제출하세요.**

[수정](#)

[삭제](#)

[제출](#)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보기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구직활동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재취업희망 유형

재취업희망 유형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기타프리랜서 등

-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려고 하는 일자리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 전에 근무했던 일자리 유형이 적용됩니다.
- 노무제공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가 해당합니다.



임시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우10의 경우, '이 페이지에서 추가 메시지를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음'에 체크하지 마시고 진행하세요.
(이미 체크하였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새 창에서 진행하세요.)
임시저장이거나 다음단계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콜센터(1577-7114, 2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유의 사항

- 기재하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및 지원금 등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반환 및 추가징수)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위장고용, 해고 등)
- 이직사유 허위 기재
- 취업사실 은닉,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

**"임시저장" 먼저 하고 "다음" 클릭 하세요
저장하지 않으면 다시 작성할수 있습니다.**

[이전](#)

[초기화](#)

[임시저장](#)

[다음](#)